

# 경 고 장

## 태안군

개간사업 지내 축제장 조성을 위한 불법건축물 축조 등 농지관리 부적정

- 태안군(신속민원처리과, 남면)에서는 자체사무 규정 등에 따라 농지에서의 농지전용 또는 건축행위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써
  - 「농지법」 및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따라 농지에서의 불법 건축행위 등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즉시 이행토록 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등 농지 등에서의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
  - 태안군 남면 신온리 168-56번지 일원 농지의 경우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규정에 따라 당초 임야에서 개전 목적으로 개간사업 준공을 받아 「농지법」 규정에 의한 농지로 관리되어야 하는 토지임에도, 금번 태안군 종합감사시 현지 확인된 사항과 같이 수년간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 정당한 절차없이 위법하게 설치된 14동 건축물이 축제장 관련 업무용 시설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.
- 이에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의거 엄중히 “기관경고” 조치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12. 26.

충 청 남 도 지

